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1,220억 원 상당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한 분쇄기 69대(54억 원) 적발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폭발방지 기능이 탑재된 방폭모터 161개(18억 원) 적발 등
- 통관단계 검사요건심사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정보수집 확대로 불법행위 척결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①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②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 원(11건),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 원(24건)을 적발하였다.

①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

【사례① 분쇄기 부정수입】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 원)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당 처리용량을 50kg 미만 분쇄기로 부정하게 신고하여 수입한 업체 적발

* 시간당 처리용량이 50KG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사례② 방폭모터 부정수입】

폭발방지 기능이 탑재된 외국산 모터* 161개 (18억 원)를 수입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업체 적발

* 방폭모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사례③ 산업용 플랜지 밀수입】

외국산 산업용 플랜지 725,065개(93억 원)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부품(PIPE PART 등)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업체 적발



② 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상

**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 · 벌금 최대 1억 원

<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산둔갑 등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 >

【사례① 전력량계용 모뎀 부정납품】

외국산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전력량계용) 412,598개(9억 원)를 수입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부정납품한 업체 적발



【사례② 중국산 철제봉 단순가공 후 미표시】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하여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철제봉 8,688톤(87억 원)을 국내판매한 업체 적발



【사례③ 태양광 인버터 원산지 오인표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제조한 태양광 인버터가 한국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업체명만 기재하여 원산지를 오인 가능한 상태로 태양광 인버터 100대(28억 원)을 국내판매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 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조사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910)
		담당자	서기관	전두한 (042-481-7818)
담당 부서	심사국 공정무역심사과	책임자	과 장	윤지혜 (042-481-7880)
		담당자	사무관	김영순 (042-481-7742)

